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7220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6. 11.

판 결 선 고 2015. 7. 16.

주 문

1. 피고가 2014.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50,606,530원, 농어촌특별세 36,926,750원, 지방교육세 172,599,15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8. 골프시뮬레이터 제조, 판매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5. 2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다. 현재 원고는 [redacted] 구 [redacted]11로 13[redacted]동)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골프시뮬레이터 등을 제조·판매하는 스크린 골프사업과 골프시뮬레이터 설치 및 AS를 진행하는 유지보수 사업, 골프장 운영 및 골프용품 판매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6. 25. [redacted]구 [redacted]동 [redacted]8 대지 1203.7㎡ 및 그 지상 건물(면적 6188.48㎡, 이하 '이 사건 연구동'이라 한다)과 같은 동 68-22 대지 794.4㎡ 및 그 지상 건물(면적 8962.12㎡, 이하 '이 사건 지점동'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redacted]구 [redacted]대로[redacted]35([redacted]동)(이 사건 지점동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종된사업장(임대사업장) 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동을 취득하면서 이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이 정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지점동을 취득하면서 그 중 임대용도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533,701,970원, 농어촌특별세 26,685,090원, 지방교육세 53,370,190원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지점용도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2,304,493,950원, 농어촌특별세 57,612,340원, 지방교육세 345,674,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3. 19. 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의 기존 연구소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42-10 해성2빌딩 12층, 13층, 1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층'에서 이 사건 연구동으로 연구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하여, 다음 날인 2013. 3. 20.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2.경 이 사건 연구동 지하2층 일부(아래 [표]의 '소매점'과 '휴게음식점')를 카페 및 편의점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면서 같은 달 27. 용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이후 [redacted]시 세무과는 2013. 3. 12.부터 같은 달 29.까지 [redacted]구 지방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 사건 연구동 중에서 위 용도변경된 부분(소매점과 휴게음식점)과 이 사건 지점동 중에서 원고가 임대용도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공실인 부분(지상 4층 내지 지상 8층)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5. 12.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과 서울특별시의 위 지적에 따른 중과세액의 차액에 대해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3. 6. 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지점동 중 공실부분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피고는 위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고한 바와 같이 과세처분을 하였다.

사. 그 후 감사원은 2014. 3. 5. 이 사건 연구동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지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10. 산기협에 이 사건 연구동에 대한 실사를 요청하였다.

아. 산기협은 2014. 3. 11. 이 사건 연구동의 사용현황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2014. 3. 28. 이 사건 연구동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면적을 이 사건 연구동 전체면적(6,114.48㎡)에서 지하5층 내지 지하2층과 지상5층을 제외한 지하1층 내지 지상4층의 면적(2849.68㎡)으로 변경하였다[이후 2014 4. 17. 원고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상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층의 모션캡처룸(63.82㎡)의 경우에는 연구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자. 이에 피고는 2014. 4. 22. 이 사건 연구동 중 산기협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면적에서 제외된 3200.22㎡ 부분(지하5층 내지 지하2층과 지상5층에서, 이미 중과세율로 과세된 위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감면받은 후 4년 이내에 용도변경을 한 부분으로서 동시에 대도시내의 지점설치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지특법 제46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2014. 4. 22. 원고에게 취득세 1,734,640,680원, 농어촌특별세 36,716,360원, 지방교육세 220,298,260원 합계 1,991,655,3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차.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5. 19. 서울특별시에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서울특별시장은 2014. 7. 29. ① 2014. 3. 11. 산기협의 현장조사 당시 기업부설연구소 면적에서 제외되었다가 이후 추가소명을 통해 2014. 4. 17. 연구소 면적으로 다시 인정받은 지상 5층의 모션캡처룸(63.82㎡)의 경우는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쟁점부분 중 공용면적을 제외한 부분(아래 [표]의 지하3층, 지하2층의 회의실, 지상5층의 강당)에 대해서는 그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공용면적(지하5층, 지하4층, 지하2층)은 그 중 지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과 연구소로 사용하는 부분을 나누어, 공용면적 중 지점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아래 [표]의 'B' 표시부분)은 중과세율로, 연구소로 사용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아래 [표]의 'A' 표시부분, 이하 '이 사건 쟁점 공용면적'이라 한다)은 일반세율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는 취지의 일부채택결정을 하였다.

[표, 단위 : ㎡]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위치	용도	면적구분	신고시	이 사건 처분			원고의 주장	
			감면면적	감면면적	일반세율 적용면적	중과세율 적용면적	감면면적	일반세율 적용면적
지하5	주차장	공용면적	671.56		428.18	243.38	428.18	243.38
	정화조, 코아	공용면적	152.36(+37)		120.73	68.63	120.73	68.63
지하4	전기실 등	공용면적	212.96(+37)		159.37	90.59	159.37	90.59
지하2	로비 등	공용면적	508		323.89	184.11	323.89	184.11
		계	1618.88		1,032.17 A	586.71 B	1,032.17	586.71
지하3	골프연습장	기타전용	747.76			747.76		747.76
	전산실, 피트니스	기타전용	76.54			76.54		76.54
지하2	회의실	기타전용	241.54			241.54		241.54
	소매점	기타전용	58.64			58.64(기과세)		58.64(제외)
지하2	휴게음식점	기타전용	16.12			16.12(기과세)		16.12(제외)
지하1	업무시설(사무소)	연구전용	268.47	268.47			268.47	
	업무시설(사무소)	연구전용	263.93	263.93			263.93	
1	업무시설(사무소)	연구전용	579.32	579.32			579.32	
2	업무시설(사무소)	연구전용	579.32	579.32			579.32	
3	교육시설(연구소)	연구전용	579.32	579.32			579.32	
4	교육시설(연구소)	연구전용	579.32	579.32			579.32	
5	모션캡쳐룸	연구전용	63.82	63.82			63.82	
	강당	기타전용	515.5			515.50		515.50
		계	4569.6	2,913.50		1,656.10	2,913.50	1,581.34
		총계	6188.48	2,913.50	1,032.17	2,242.81	3,945.67	2,168.05

카.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4.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연구동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1,450,606,530원, 농어촌특별세 36,926,750원, 지방교육세 172,599,150원 합계 1,660,132,4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11 내지 1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쟁점 공용면적은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주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산기협으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이 사건 연구동의 공용면적 중, 전체 전용면적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전용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부분($1618.88㎡ \times \frac{2,913.5㎡}{2,913.5㎡ + 1,656.1㎡} = 1,032.17㎡$, 이 사건 쟁점 공용면적)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가 면세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점 설치로 볼 수 없다는 주장

이 사건 연구동과 이 사건 지점동은 전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점동에 지점이 설치된 날짜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2013. 3. 4.경이고, 이 사건 연구동을 취득한 날짜는 2012. 6. 25.경이므로, 이 사건 연구동을 지점 설치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연구동을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공용면적 일부와 기타전용면적(위 [표]에서 '중과세율 전용면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미 과세된 소매점과 휴게음식점을 제외한 부분, 이하 '이 사건 중과세율 쟁점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 공용면적에 대한 과세의 적부

지특법 제4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을 받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서 필요한 연구원의 수를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기협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이 사건 쟁점 공용면적을 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함하여 이 사건 연구동 중 지하5층 내지 지하2층과 지상5층 3200.22㎡ 부분이 산기협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면적에서 제외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 공용면적이 산기협으로부터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계법령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지특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반드시 산기협으로부터 인정받은 면적 그 자체로만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연구동의 경우와 같이 산기협으로부터 인정받은 면적이 전용부분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용부분의 이용에 필수적인 공용면적 역시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 쟁점 공용면적은 주차장, 전기실, 로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사건 연구동의 사용과 관리에 필수적인 시설들이므로, 비록 기업부설연구소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2) 중과세율의 적용여부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항은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는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사무소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지점동에 원고의 지점이 설치된 시점을 살펴보건대, 위 각 규정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요건인 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지방세법상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0029 판결), 원고가 2012. 6. 25. 이 사건 지점동을 취득하고 종된사업장(임대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지점동을 취득한 다음 기존의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이 사건 지점동을 임대용부동산으로만 사용하다가 2013. 1. 28.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가구 등의 집기 등을 설치하였고, 2013. 3. 4.경부터 이 사건 지점동에 실제로 원고의 직원들을 입주시켜 업무를 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이 사건 지점동의 업무개시 시점 자체에 대해서는 피고도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점동에 원고의 지점이 설치된 시점은 2013. 3. 4.경이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2012. 10. 19.부터 2013. 1. 26.에 걸쳐 이 사건 연구동에 입주하여 업무를 개시하고 2013. 3. 19. 산기협에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를 하였다.

먼저, 이 사건 중과세율 쟁점면적 중에서 먼저 '지하5층의 주차장, 지하3층의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시설, 지하2층의 회의실, 지상5층의 강당(이하 '주차장 등'이라 한다)'을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26, 26호증의 각 영상, 증인 A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연구동과 이 사건 지점동은 구획이 구분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하나의 건물과 같은 외형으로 붙어 있으며, 지하2층을 통해서는 서로 이동이 가능한 사실, 이 사건 본관동의 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원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점동의 직원들 역시 등록절차만 거치면 이 사건 연구동의 주차장에 들어가 주차를 할 수 있고, 이 사건 지점동 직원들 역시 직원신분증만 있으면 피트니스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점동과 연구동의 취득일자, 업무개시 시점, 이용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차장 등은 이 사건 지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연구동과 지점동을 취득할 시점부터 이 사건 지점동 중 위 주차장 등을 이 사건 지점의 업무시설 및 지점 직원들의 편의시설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중과세율 쟁점면적 중에서 '주차장 등'에 해당하는 면적 부분은 위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 사건 중과세율 쟁점면적 중에서 '지하5층의 정화조와 코아, 지하 4층의 전기실 등, 지하2층의 로비 등, 지하3층의 전산실(이하 '정화조 등'이라 한다)'을 살펴보건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부분은 오로지 이 사건 연구동의 운영과 관리 및 통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분으로서 이 사건 지점동의 사용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고(전산실의 경우 골프연습장에 한정되지 않고 이 사건 연구동 전체의 컴퓨터를 통제하는 전산정치로 보이고, 지하2층 로비 등의 경우 이 사건 지점동으로도 통하는 문이 나 있기는 하나, 이를 두고 이 사건 연구동과 이 사건 지점동이 로비를 공유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지점동에는 지점동을 위한 정화조와 전기실, 로비 등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정화조 등은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중과세율 쟁점면적 중에서 이 사건 지점동 직원들도 함께 사용하는 위 주차장 등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적법하나, 이 사건 연구동의 부속시설에 불과한 위 정화조 등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 공용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부분과 이 사건 중과세율 쟁점면적 중에서 위 정화조 등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부분에 한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적법한 세액의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김유정

판사 안좌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기업부설연구소)
①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

▣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9. 28. 대통령령 제24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3명 이상으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명 이상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2명 이상
4. 그 밖의 기업부설연구소: 10명 이상
②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란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전담요원을 1명 이상 늘 확보하고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개발부서로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4. 미래창조과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① 영 제16조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2. 연구시설 현황(별지 제3호서식)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6. 연구소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연구소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한다)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연구소만 해당한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중소기업자가 설립한 연구소 또는 영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의 연구소만 해당한다)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자가 설립한 연구소만 해당한다)
11. 제2조제7항에 따른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연구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였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8-25

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